

## 충청북도문화상조례(안) 개정조례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수상대상자)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9월 1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9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②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.

제3조제3호중 "예술부문"을 "문화예술부문"으로 하고, 동조 제5호중 "새마을운동부문"을 "지역개발부문"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7. 교육부문

제7조제2항중 "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"를 "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4. 9. 9.

제 안 자 ; 박만순의원 외 5인

## 수정이유

문화상 수상부분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한자의 시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

## 1. 수정주요골자

충청북도문화상조례 제3조제7호로 “교육부문” 신설(안 제3조)

## 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7. 교육부문

# 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수정(안)
제3조(수상부문) 문화상 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	제3조----- ----- ----- 1. ----- 2. ----- 3. <u>문화예술부문</u> 4. ----- 5. <u>지역개발부문</u> 6. -----	제3조----- ----- ----- 1. ----- 2. ----- 3. ----- 4. ----- 5. ----- 6. ----- 7. <u>교육부문</u>
1. 인문사회과학부문	1. -----	1. -----
2. 자연과학부문	2. -----	2. -----
3. 예술부문	3. -----	3. -----
4. 체육부문	4. -----	4. -----
5. 새마을운동부문	5. -----	5. -----
6. 언론출판부문	6. -----	6. -----

## 충청북도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수상대상자)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9월 1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9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②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.

제3조제3호중 "예술부문"을 "문화예술부문"으로 하고, 동조 제5호중 "새마을운동부문"을 "지역개발부문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"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"를 "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## ○ 충청북도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(안)

현행	개정
제2조 (수상대상자)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10월 1일 현재 5년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10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  ②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.	제2조 (수상대상자) ① - - - - - ----- 9월 1일 ----- ---(- - - - - - - - - 9월 1일 - - - - - - - - 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  ②- - - - - 그 수상부문 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.
제3조 (수상부문)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  1. 인문사회과학부문 2. 자연과학부문 3. 예술부문 4. 체육부문 5. 새마을운동부문 6. 언론출판부문	제3조 (수상부문) - - - - - 1. - - - - - 2. - - - - - 3. 문화예술부문 4. - - - - - 5. 지역개발부문 6. - - - - -
제7조 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 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 중에 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	제7조 (간사와 서기) ①- - - - - -----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.